

법정책이슈브리핑

Law & Policy Issue Briefing

제2025-1호

발행일 : 2025. 4. 4. (금)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관한 입법 · 정책적 쟁점 검토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I. 들어가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준비하던 CBDC 도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는 반면, 관련 제도 마련이나 입법은 비교적 뒤쳐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활성화된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 정책적 논의는 활발하나 정부와 국회는 신기술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신중한 접근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진흥과 활성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서도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이 발표되고, STO 제도화 관련 입법 및 정책도 다시금 추진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및 활성화 움직임이 포착된다.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과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신외환법 제정 등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관련 정책 추진은 제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거래 규모가 커지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련 제도 마련과 필요한 규제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정책이슈브리핑 제2025-1호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된 상황을 확인하고, 입법 · 정책적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¹

¹ 여기서는 외국환거래법령을 중심으로 한 현행 외국환거래 규제 체계의 적절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 규제 체계를 전제로 한 문제 상황과 관련 쟁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II. 가상자산과 외국환거래 개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가상자산의 개념 등과 외국환거래 규율 체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본다.

1. 가상자산 개념, 유형, 관련 시장 현황

가상자산이란 분산원장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디지털정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고 한다)과 개정 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법률 등,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당해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정의되고 있다(제2조 제1호 단서).² 비트코인(BTC), 이더(ETH), 리플(XRP), 솔라나(SOL) 등 가상(암호)화폐,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이며, 테더(USDT), USD 코인(USDC)과 같은 스테이블코인도³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규율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토큰 증권의 경우 현행법상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⁴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앙은행과 각종 게임회사들, 지급·결제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분산원장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 증표를 발행하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이와 같은 전자적 증표들 중에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결제수단,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할인쿠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의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NFT의 구체적 성질과 기능에 따라 가상자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외에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화폐(통화), 암호화폐(통화)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자산이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가상자산의 어떤 기능과 성질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같은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의 발전과 거래의

²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분산원장기술과 암호화 기술의 사용을 가상자산의 개념 요소로 포함하지 않아 그 범위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³ 스테이블코인이란 높은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와는 달리 다른 자산(예컨대, 달러, 금 등)에 연계(페깅, pegging)하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변동성을 줄여 가치의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박준·한민, 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24, 11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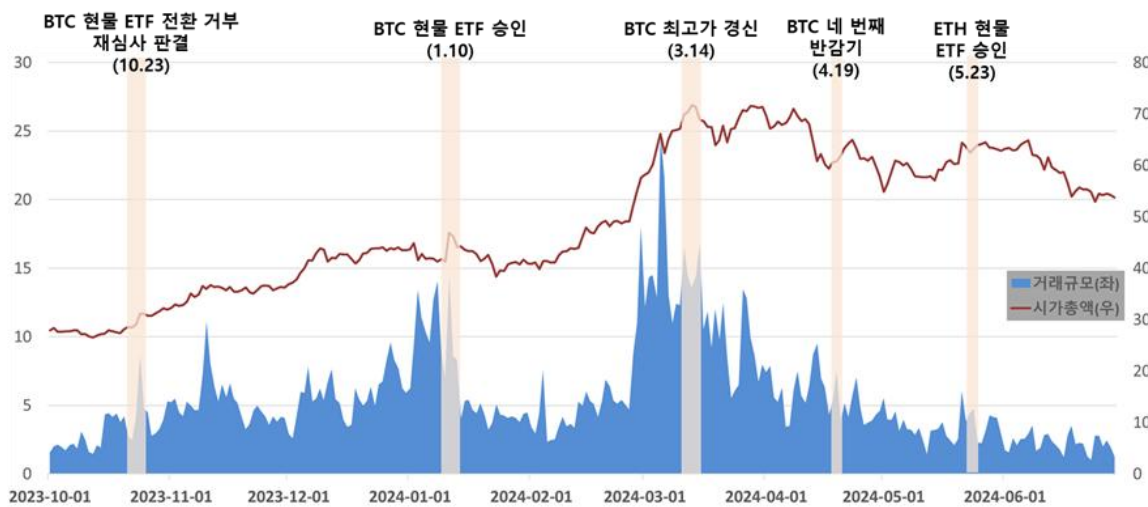
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에 따르면 있다(제2조 제3호). 참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는 개정 전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규정한 것이다.

형태가 급변하고 있어 통일된 혹은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법률용어로 정의된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고, 주로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 지급 토큰형(지급결제형), 유틸리티 토큰형(유틸리티형), 증권형 토큰(자산형)으로 구분한다.⁵ 그러나 실제 운용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복수의 기능을 동시에 가져 일률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술 발달과 새로운 금융거래의 형태로 인해 그 기능이나 성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 6월 말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3,125조 원(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3년 말(2,143조 원) 대비 46% 증가하였고,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제출자료 기준)은 55.3조 원('24.6월 말)으로 '23년 말(43.6조 원) 대비 27% 증가하였다.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087조 원('24년 상반기)으로 '23년 하반기(649조 원) 대비 6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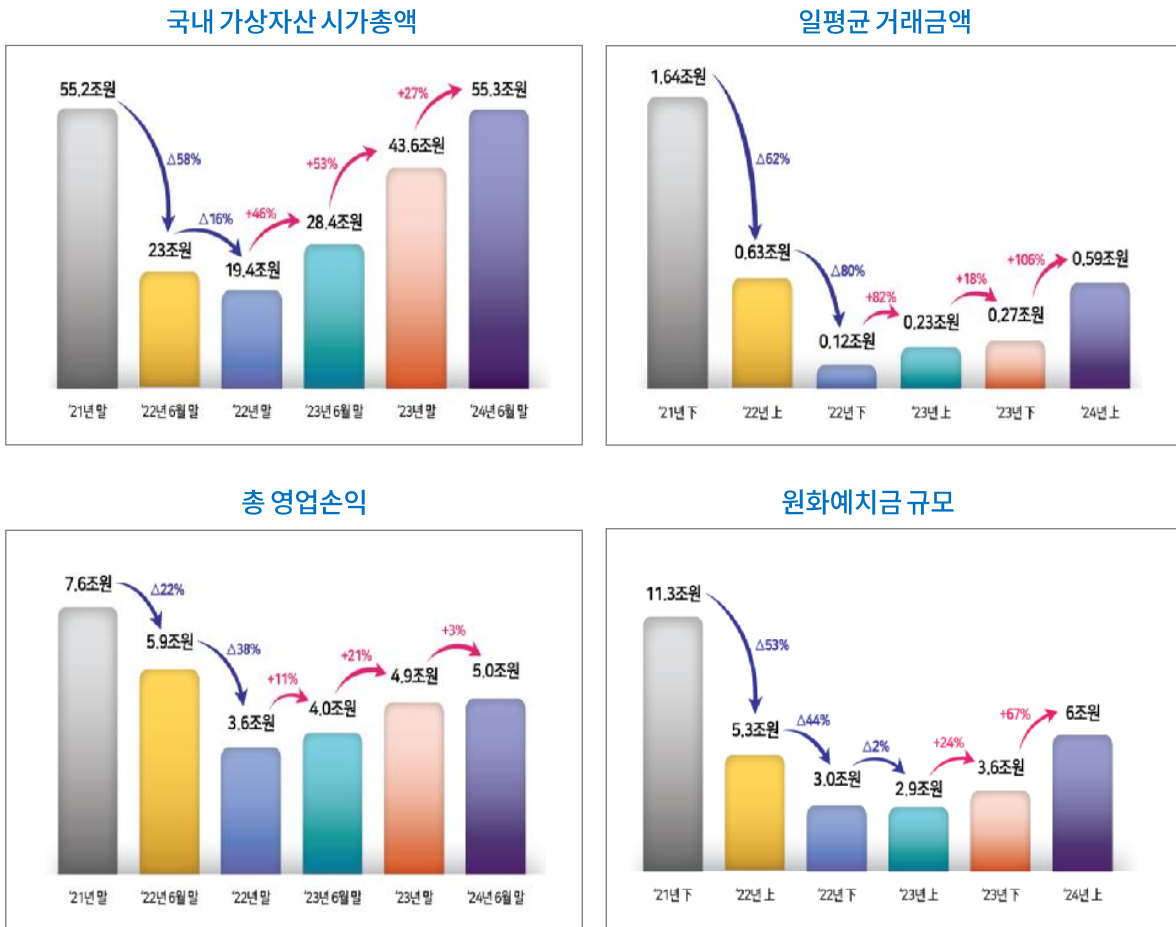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 및 시가총액 추이('23.10월 - '24.6월)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4. 10.).

⁵ 자세한 내용은 박준·한민, 위의 책, 1148-1150쪽 참조.

[그림 2] 국내 가상자산 시장 비교 ('21.下 ~ '24.上)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4. 10.)

2025. 1. 23.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42개 사가 있으며,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서비스 등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 수치이다.

2. 외국환거래 규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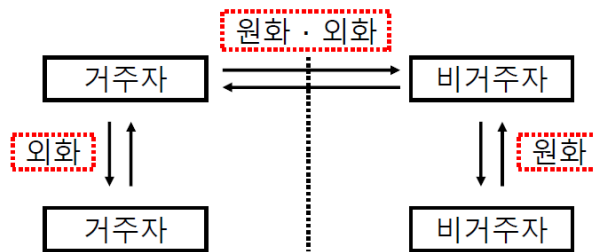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의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⁶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외부의 요구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대외거래의 자유 보장과 원활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은 외화 등 외국환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규율 체계가 설계되어 있다. 정부는 국내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무역수

⁶ 외국환거래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로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시장법, 한미행정협정 등도 있다.

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된 데 따라 해외 투자나 대외 보유자산을 늘려 경제 변동성에 대응하려는 목적과 함께, 복잡하고 번거로운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등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각종 대외 불안 요소(예컨대, 리만브라더스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등)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금융디지털화, 가상자산 거래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까지 반영한 신외환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⁷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는 국내에서의 외국환 및 외국환거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및 지급·수령, 비거주자가 하는 원화거래, 거주자(개인 및 법인)의 외국에서의 거래(외국환거래, 원화거래 불문)가 모두 포함되나, 여기서는 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 거래 및 그 지급·수령 유형을 다룬다.

[그림 3] 외국환거래법 적용범위



출처: 이승호, 외국환거래법 현황과 개편 필요성,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자료(2022. 7. 5.)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몇 가지 주요한 규제 유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외국통화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 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본적으로 외화와 원화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5천 불 이내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송금 시에도 은행 영업점에서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한 번에 미화 5천 불 이하는

⁷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현행 법령 규율 체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 현행 법령을 해석,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고, 연간 미화 10만 불 이하는 왜 송금하는지 구두 증빙만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 증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더욱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 가상자산과 외국환거래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관한 규율 체계는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모 및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또는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거래 규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 외국환거래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이 외국환 내지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이 자본거래 혹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 규제당국도 사법당국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외국환거래에 해당하는 사례에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경우나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어떤 유형의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인데, 정부의 소극적이고 불명확한 태도는 자칫 가상자산 거래나 나아가 새로운 금융기술 발전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2024년 10월 기재부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우회·불법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 정도만이 확인된다.

⁸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국환거래 금액은 11조 2,5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다(‘가상자산 환치기’ 기승...불법 외환 거래 5년간 11조원 적발, 국제신문, 2024. 9. 12. 자 기사). 불법 외국환거래 규모는 2023년 한 해 1조 8,062억 원이었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조 438억 원에 이르러 전년도 규모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외국환거래 금액 1조 8,062억 원 중 환치기는 1조 5294원이고, 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1조 4454억 원이다. 즉, 2023년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전체 외환범죄의 80%, 환치기의 95%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 환치기 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금액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김기호, 가상자산 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24, 72-73쪽).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한 해외의 규율 사례와 국내의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을 확인해 본다. 해외 사례는 거래 규모나 관련 시장에 영향력이 큰 미국, EU, 일본의 사례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1.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율 관련 해외 사례

가. 미국

미국에서 외국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자금세탁 방지, 국가 안보, 금융시장 안정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 규율 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가상자산이 외환 파생상품과 결합하거나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외환과 연계된 경우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OCC(통화감독청) 등의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가상자산의 분류 방식과 레버리지, 파생상품 또는 법정화폐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SEC, CFTC,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또는 IRS(국세청) 등의 규제를 받는다. 가상자산이 Howey Test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SEC의 관할권에 속하고, SEC는 증권법에 따라 미등록 초기 코인 공개(ICO) 및 거래소에 대해 규율한다. 증권형 토큰을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대체 거래 시스템(ATS)으로 등록해야 한다. 토큰 발행자에 대한 공시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CFTC는 비트코인(BTC)과 이더(ETH)를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상품으로 분류하고, 가상화폐 선물, 파생상품, 스왑 시장을 규제한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수탁업체는 은행비밀보호법(BSA)에 따라 자금 서비스 사업자(MSB)로 분류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FinCEN에 등록하고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며, 의심스러운 거래(SAR)를 보고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 이란, 러시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의 가상자산 거래가 있는 경우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은 개별 주에 따라 규제 체계가 달라 이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뉴욕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도 주 차원의 송금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나. EU

EU에서는 혁신 및 공정경쟁 지원,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규제 법

를'[Regulation(EU) 2023/1114 Markets in Crypto-Assets, 이하 MiCA라 한다]을 2023년 6월 공포하여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MiCA는 가상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맞춤형 단독 입법으로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되고 있다. MiCA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적용되는 규범인 점에서 그 자체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지만, 외환 연계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MiCA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MiCA에서는 국경 간 거래도 트래블룰(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 교환 의무)을 의무화하고 있고, 해외 가상자산 발행사에도 인가의무, 준비금·운용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위반 시 상장폐지).⁹

다. 일본

일본에서는 2022년 5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제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외환 및 무역법'(이하 외환법이라고 한다)이 시행 중이다.¹⁰ 개정 외환법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게 고객 대금지급 등 가상자산의 이전이 경제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10만 엔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행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도 부과하였다. 외환법 상 '지급수단'의 정의와 별도로 '자금결제법' 상 '암호자산'의 정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으며,¹¹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계약에 근거해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하는 권리가 발생하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외환법 상 '자본거래'로 간주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6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3,000만 엔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0일 이내에 소정의 보고서를 일본은행을 경유해 재무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일본의 외환법 제16조의2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대상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¹²

2.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관련 정책 동향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웹상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율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폭넓게 형성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설계나 입법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찾기 어렵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적극적인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와 규율 체계 마련,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약속하고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제·개정하여 점차 제도화 및 이용자 보호의 틀을 만들어

⁹ 기재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¹⁰ 더 자세한 내용은 이병관, 일본 정부, 암호자산 관련 외환법 개정, 주간금융브리프, 제31권 14호, 한국금융연구원, 2022, 24-25쪽 참조.

¹¹ 박종세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지급결제 조사자료, 제2022-3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22, 118쪽.

¹² 박종세 등, 위의 보고서, 118쪽.

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2단계 입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미국 등 해외에서의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단체자금조달 방지, 가상자산의 불법·불공정 거래 규제의 측면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재부, 관세청, 법무부 등이 불법 외국환거래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적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나 조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부장관은 2024년 말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고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¹³ 2025년 1월 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상자산의 “우회·불법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기재부장관은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을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¹⁴

한편, 최근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025. 2.)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한 정책의 귀추를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3.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관련 입법 동향

2016년 기재부는 소액 해외송금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외국환취급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25호로 개정 외국환거래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후 가상자산 ICO 금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액 해외송금업 영위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⁵ 실제로 2021년 6월 15일 법률 제18244호로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규제의 수위를 높였다. 이후 기재부와 금융위, 관세청, 법무부 등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거래 단속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한편, 2024년 10월 기재부장관의 인터뷰 이후 2024년 12월 20일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06816)이 발의되었다. 의원입법안이나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이 기재부장관이 밝힌 입법 방

¹³ [코인 환치기 방지... 국경 간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조선일보, 2024. 10. 31. 자 기사.](#)

¹⁴ [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 보고 의무화...외국환거래법 개정", 아주경제, 2024. 10. 25. 자 기사.](#)

¹⁵ 2017년 1월 17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공포되기 직전 2017년 1월 10일 기재부와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송금업을 해 온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뒤통이에.. 핀테크업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결론, 머니투데이, 2017. 1. 11. 자 기사](#)). 당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송금업이 합법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오히려 외환당국은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거래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안원문에 따르면 당해 개정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해 규율하여,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이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기재부장관에 가상자산이체업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 외환거래법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벌칙과 과태료 규정에도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다. 전체적으로 개정안이 예정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율 체계는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거래법에 의거해 규율하되, 기존의 지급수단(혹은 외국환), 자본거래(외국환업무) 등 개념에 포섭하여 다루기보다는 별개의 대상 및 행위 유형으로 취급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관련 쟁점 및 업계의 요구 사항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환당국은 신외환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어, 외국환거래 신고제도 자체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가상자산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⁶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원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되도록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자제하거나 법령 위반 여지를 무릅쓰고 사후적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필요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환당국이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¹⁷

1. 가상자산의 외국환거래 규율 관련 쟁점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가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체계 내에서 가능한지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외국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부터 실제로 가상자산 매입 목적의 자본거래(해외 예금, 송금)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별 거래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한 대금 송금 허용 여부 등)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자본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가상자산을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가상자산이 수출입 관련 신고대상인지 여부(가상자산 자체의 반입·반출이 허용되는지 여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자체가 외환거래신고대상인지 여부 등이 문제시되

¹⁶ 박종세 등, 앞의 보고서, 119쪽.

¹⁷ [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소 '정조준'...업비트·코빗 세무조사, 이데일리, 2025. 2. 20. 자 기사.](#)

고 있다. 주요 쟁점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가. 가상자산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해당 여부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에서는 “대외지급수단”(제4호), “외화증권”(제8호), “외화파생상품”(제10호), “외화채권”(제12호) 등의 개념도 명시하고 있다. 개별 가상자산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규율 대상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¹⁸ 특히 대외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엘살바도르에서 자국의 법화로 인정한 경우가 있고, 칠레 의회, 미국 애리조나주 의회에서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통화로 인정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있었다. 비트코인이 외국통화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밖에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개념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이 전제되는 것으로 보인다.¹⁹ 아직 외환당국과 사법당국에서 가상자산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여부 판단기준

외국환거래법은 그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제2조), 외국환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제3조 제1항 제16호 라목) 등 그 적용 대상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여부와 그 판단기준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은 물리적 소재보다 분산원장상 데이터를 통해 대외거래성이 판단될 필요가 있어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더욱 신중을 요한다.²⁰ 실제로 하급심 판결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서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다.²¹

¹⁸ 외국환거래법에서 증권, 파생상품 등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의 자본거래 규제 대상인지 여부 등이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 여부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¹⁹ 더 자세한 내용은 김재진·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 2022, 58-62쪽 참조.

²⁰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정순섭·주성환,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체계와 신종 거래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4, 69-73쪽 참조.

²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46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9노3615 판결 등 참고.

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본거래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상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본거래(해외 예금, 송금)가 허용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매매목적물인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별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한 대금 송금, 가상자산 자체의 반입·반출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외국환은행, 등록된 소액 해외송금업자 등이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거래로 인정되고 있다.²²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외환당국은 경우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해외 예금, 송금 등을 불법 외환거래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법원도 당해 행위를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나 법원이 자본거래 해당 여부나 자본거래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라. 가상자산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지급수단’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가상자산이 외국환거래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외환당국과 사법당국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외환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하부 위임된 조항에 근거하여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으로 명시하는 방안, 가상자산 매입자금 송금·예치, 가상자산 관련 권리에 대한 거래 등을 자본거래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²³ 참고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부정한 사례와 인정된 사례가 모두 존재한다고 한다.²⁴

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자체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신고제도 등의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²² 박종세 등, 앞의 보고서, 49쪽.

²³ 박종세 등, 앞의 보고서, 118쪽; 참고 입법례로 일본의 경우 외환법에서 ‘지급수단’의 정의와 별도로 ‘자금결제법’ 상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6조 제9호), 같은 법은 가상자산 관리계약, 대차계약 또는 이전할 의무의 보증계약, 매매/교환에 따른 가상자산을 이전 요구할 권리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제20조의2, 제21조).

²⁴ 정순섭, 가상통화의 법률문제, BFL, 제89호, 2018, 13쪽; 미국에는 비트코인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정하여 자금세탁행위와 무인가 송금업(money services business)으로 기소된 피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Florida v. Espinoza, Order Granting Defendant’s Motion to Dismiss the Information, No. F14-2923-TP (July 22, 2016)]와 “비트코인은 그 용어의 일반적 의미에서 자금이 해당”한다고 하고, “비트코인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수취되거나 은행계좌로 거래소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도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금전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교환수단과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비트코인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US V. Murgio, Case No. 15-cr-769 (AJN) (S.D.N.Y. Sep.19, 201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자체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실질적으로 외환거래와 유사하기 때문에 외환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제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설계한다는 것이 어렵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EU 등 해외 외환당국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주요 내용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외환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대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일본의 외환법 제16조의2를 참고하여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²⁵

2.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외국환거래 사례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국경 간 거래를 하는 데는 다양한 동기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외국환거래 규제를 회피하여 간편하게 금전 송수신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거나 대외 거래에 부가되는 각종 세금, 수수료 등을 면탈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법 외국환거래로 문제시되는 주요한 거래 유형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가격차(소위 김치프리미엄)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일명 환치기 사례이다.²⁶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거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된 주요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

(1) 사건 유형

- ① 국내에서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거주자, 비거주자 불문)이 중국에서 환전의뢰인들로부터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받아 중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였다.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한화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환치기).
- ② 피고인은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로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이를 매도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현금(원화) 교부,

²⁵ 박종세 등, 앞의 보고서, 118쪽.

²⁶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로 김동섭 등,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18-8호, 2018; 이 보고서에서는 소위 김치프리미엄의 원인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과열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재정거래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는 기술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해외 공급이 제한적인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권 교부, 지정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불법 송금대행).

(2) 주요 쟁점

위 사건들의 재판상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국내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한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쟁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도 있다.²⁷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환업무가 지급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외국환업무로 보는 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²⁸ 또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라는 법리에 근거²⁹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도 있다.³⁰

(3) 검토

가상자산의 개념과 외국환거래법상 법적 성격,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엄밀히 논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로 보이며, 형벌을 부과하는 사안임을 고려한다면 좀 더 엄격한 증거수집과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없었고, 외환당국에서도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의 위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원칙, 자백의 증거능력, 증명력 등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제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나.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등 위반)

이 사안도 불법 외환거래의 목적은 마찬가지로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며, 지정거래 외국환은

²⁷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535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²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17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²⁹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등.

³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1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거래를 한 것이 문제되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익을 남기고자 해외에 서류상으로 존할 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속칭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곳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각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국내 은행 계좌에서 각 해외 계좌로 미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하였다.³¹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피고인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거래를 하여, 포괄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

(3) 검토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당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처벌된 사안으로 가상자산 자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에 부수되거나 수반된 행위들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기타 가상자산 시세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한 무역대금 혹은 유학경비 가장 송금(외국환거래법 제15조 위반),³² 불법 인출(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³³ 원정 도박자금 환치기 수법³⁴ 등도 보도되고 있다.³⁵

³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93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³²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본인 명의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하여 송금.

³³ 국내 직불카드 등으로 해외 ATM기기에서 현금 인출하여 가상자산 구매.

³⁴ 불법 도박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원화로 가상자산(테더,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해외 카지노에 전송하여 외화로 환전 후 도박자금을 수령한 사례.

³⁵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2022. 8. 30.); 서울세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조 6천억 원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2021. 7. 8.); 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수백억대 원정 도박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 서울본부세관 보도자료(2023. 12. 5.) 등 참고.

[표1]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거래 관련 처벌 규정

불법 외국환거래 행위	위반법조	처벌규정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외국환거래법 제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허위증빙을 통한 외환송금	외국환거래법 제15조	과태료 부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50억 원 초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0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위반금액의 100분의 4)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50억 원 초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0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위반금액의 100분의 4)

3.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제와 관련한 업계의 입장

외환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처벌을 예고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입장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대변하는 목소리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외환 등 금융당국의 부정적 시각에 변화를 촉구하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미 어느 정도의 규모와 입지를 갖춘 사업자를 제외한 신규 사업자나 스타트업들의 사업 참여 및 진행에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예고하고 있는 신고의무 부과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정책의 경우, 실제 거래 규모나 빈도가 크고 잦아 정부가 의도하는 규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현행 금융규제와 같은 파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보다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V. 나가며

최근 특정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는 등 가상자산의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가상자산의 외국환거래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실 가상자산이나 간편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지급 수단과 방법이 등장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규제 체계 내로 포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금융의 디지털화는 AI시대의 도래, 로봇산업의 발전, 자율주행, UAM의 등장 등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인다. 시장은 이미 가상자산의 미래와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국회와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산업의 미래와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 방안 등을 치밀하게 고민하여 적절한 규제와 제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외환법 제정 등으로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확대하

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외환당국의 정책 방향에 맞게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관한 규제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규제만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E-mail. master@jipyong.com www.jipyong.com

법정책이슈브리핑 구독신청